

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23-61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3년 5월 26일

제출자 : 강서구청장

1. 의결주문

상위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 확립을 위한 「행정기본법」 및 「민법」의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의 만 나이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조례 내에 “만”이 포함되어 있는 나이 규정에서 “만” 삭제 (안 제1조~제13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행정기본법」 제7조의2, 「민법」 제158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각 조례 소관부서들과 합의 완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생략

※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(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)

2)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동의

3) 규제사전심사 결과: 해당없음

4) 성별영향평가 결과: 해당없음

<일괄 개정 조례안 목록>

연번	해당부서	자치법규명	해당 조문
1	감사담당관	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조례	제6조(위·해촉) ① 주민구정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. 1. 만19세 이상인 자로서 주소 또는 직장소재지를 강서구에 두고 있는 자
2	자치행정과	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	제3조(대상자) 생활민원처리 지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6. 65세 이상 조부모와 만 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
3	문화체육과	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③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연습사용료 및 강습 프로그램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 6. 강서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 30퍼센트
4	문화체육과	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	제2조(정의)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		지원 조례	1. “청년”이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(이하 “강서구”라 한다)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사람을 말한다.
5	교육지원과	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	제18조의2(수강료 감면)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. 6.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부,모 또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
6	일자리정책과	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	제2조(정의)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청년”이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. 제20조(청년시설설치및운영등) ④청년시설의 입주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개인 및 단체(대표자)
7	자원순환과	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	제5조(지원대상 등)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

		관한 조례	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제4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. 1. <u>만 65세</u> 이상인 사람
8	생활보장과	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	제3조(지원대상)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의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. 1. <u>만 65세</u> 이상 노인세대
9	아동청소년과	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	제6조(위원의 임기)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<u>만 65세</u> 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재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.
10	가족정책과	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	제2조(정의) ④다자녀가정의료비(이하“의료비”라한다)란 다자녀가정의 <u>만 5세</u> 이하인 셋째아 이상 자녀가 진료를 받을 시 발생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.

11	가족정책과	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[별표 2] 이용료 감면 기준 6. 어르신(만 65세 이상)
12	어르신복지	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	제2조(정의)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“노인”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(이하“구”라한다)에 주소를 가진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.
13	보건행정과	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	제9조의2(임시예방접종) ①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. 1. 접종일 현재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만 13세 이상) 나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(만 50세 이상) 다. 「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상이자 본인(만 50세 이상)

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
운영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

제1조(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조례」의 개정)

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1호 중 “만19세”를 “19세”로 한다.

제2조(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6호 중 “만 18세”를 “18세”로 한다.

제3조(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제6호 중 “만 18세”를 “18세”로 한다.

제4조(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」의 개정)

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만 19세”를 “19세”로 한다.

제5조(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」의 개정)

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2제2항제6호 중 “만 18세”를 “18세”로 한다.

제6조(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」의 개정)

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본문 중 “만 19세”를 “19세”로 한다.

제20조제4항제1호 중 “만 19세”를 “19세”로 한다.

제7조(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1호 중 “만 65세”를 “65세”로 한다.

제8조(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

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만65세”를 “65세”로 한다.

제9조(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본문 중 “만 65세”를 “65세”로 한다.

제10조(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항 중 “만 5세”를 “5세”로 한다.

제11조(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의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기구의 대상란 제6호 중 “만 65세”를 “65세”로 한다.

제12조(「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」의 개정)

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만 65세”를 “65세”로 한다.

제13조(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제1항제1호가목 중 “만 13세”를 “13세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“만 50세”를 각각 “50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위·해촉) ① 주민구정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.</p> <p>1. <u>만19세</u> 이상인 자로서 주소 또는 직장소재지를 강서구에 두고 있는 자</p> <p>2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6조(위·해촉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19세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대상자) 생활민원처리 지원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65세 이상 조부모와 <u>만 18세</u>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 가정</p> <p>7. (생략)</p>	<p>제3조(대상자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<u>18세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</p> <p>7.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연습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(신설 2004.11.30, 개정 2012. 7.18, 2015.6.24., 2018.6.27.)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강서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<u>만 18세</u>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 30퍼센트</p> <p>7. ~ 13. (생략)</p> <p>④·⑤ (생략)</p>	<p>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----- <u>18세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7. ~ 1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청년”이란 <u>만 19세</u> 이상 39세 이하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(이하 “강서구”라 한다)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사람을 말한다.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19세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8조의2(수강료 감면) ① (생략)</p> <p>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<u>만 18세</u> 이하의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부, 모 또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</p> <p>7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18조의2(수강료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18세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청년”이란 <u>만 19세</u>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.</p> <p>2. ~ 5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19세</u> ----- -----.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0조(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청년시설의 입주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<u>만 19세</u> 이상 39세 이하의 개인 및 단체(대표자)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20조(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19세</u> ----- 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지원대상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제4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.</p> <p>1. <u>만 65세</u> 이상인 사람</p> <p>2. 3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5조(지원대상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</p> <p>1. <u>65세</u> -----</p> <p>2.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지원대상)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의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.</p> <p>1. <u>만65세</u> 이상 노인세대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3조(지원대상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<u>65세</u> 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개 정 안
<p>제6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<u>만 65세</u>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재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.</p>	<p>제6조(위원의 임기) ----- ----- ----- <u>65세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다자녀가정 의료비(이하 “의료비”라 한다)란 다자녀가정의 <u>만 5세</u> 이하인 셋째아 이상 자녀가 진료를 받을 시 발생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</p> <p>-----</p> <p><u>5세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

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			개 정 안			
[별표 2] 이용료 감면 기준 (제5조제2항 관련)				[별표 2] 이용료 감면 기준 (제5조제2항 관련)			
시설	감면 기준	대 상	비고	시설	감면 기준	대 상	비고
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 시설	전액 감면	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3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반한 성인 1명 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5.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6. 어르신(만 65세 이상) 7. 영유아 20명 이상 단체의 인솔 성인(영유아 10명당 1명) 8. 구청장이 놀이시설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		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 시설	전액 감면	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3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반한 성인 1명 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5.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6. 어르신(65세 이상) 7. 영유아 20명 이상 단체의 인솔 성인(영유아 10명당 1명) 8. 구청장이 놀이시설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	

서울특별시 강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노인”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주소를 가진 <u>만 65세</u>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.</p> <p>2. 3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<u>65세</u> ----- -----.</p> <p>2. 3.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9조의2(임시예방접종) 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1. 접종일 현재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p> <p>가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만 13세 이상)</p> <p>나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(만 50세 이상)</p> <p>다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상이자 본인(만 50세 이상)</p> <p>2. 3. (생략)</p> <p>② ③ (생략)</p>	<p>제9조의2(임시예방접종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가. ----- ----- -13세 -----</p> <p>나. ----- ----- -50세 -----</p> <p>다. ----- ----- ----- -50세 -----</p> <p>2.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③ (현행과 같음)</p>

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
일괄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9조제4항제1호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안은 「행정기본법」 및 「민법」의 행정에서의 만 나이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자치법규의 만 나이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비용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.

4. 작성자

성 명	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(담당: 행정7급 강조연)
연락처	02-2600-6317

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

-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
-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안

□ 제안이유

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 확립을 위한 「행정기본법」 및 「민법」의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의 만 나이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- 조례 내에 “만”이 포함되어 있는 나이 규정에서 “만” 삭제(안 제1조~제13조)
- 규칙 내에 “만”이 포함되어 있는 나이 규정에서 “만” 삭제(안 제1조~제2조)

□ 검토의견

- 동 일괄개정안은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“만”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, 별도로 표시할 필요가 없어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,
-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.

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

평가번호	2023-9				
자치법규명	「만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·규칙 일괄개정 조례·규칙안」				
평가담당부서	감사담당관	직급	행정7급	성명	김완주
입안주무부서	기획예산과	조치일			2023. 5. 9.
관련조문		검토결과			조치사항
- 일괄개정조례·규칙안 전부		- 부패유발 요인 없음			- 원안동의



강 서 구



수신 기획예산과장

(경유)

제목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

1. 기획예산과-5439호(2023. 5. 8.)와 관련한 내용입니다.
2. 「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」은 **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,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에 해당하므로, 제출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** 끝.

가 족 정 책 과 장

김옥단

주무관	정현주	양성평등팀장	신영숙	가족정책과장	2023. 5. 10.	김옥단
협조자						
시행	가족정책과-13755	(2023. 5. 10.)	접수	기획예산과-5548	(2023. 5. 10.)	
주	07663	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44나길 72, 화곡동별관 5층	가족정책과	/ http://www.gangseo-seoul.kr/		
	(화곡동)					
전화번호	02-2600-6762	팩스번호	02-2620-0452	/ htee916@gangseo-seoul.kr / 대국민 공개		

□ 행정기본법

제7조의2(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)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(滿) 나이로 계산하고, 연수(年數)로 표시한다. 다만,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(月數)로 표시할 수 있다.

□ 민법

제158조(나이의 계산과 표시)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(滿) 나이로 계산하고, 연수(年數)로 표시한다. 다만,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(月數)로 표시할 수 있다.